

## 제47회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총평

윤성열 강사 작성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 시험은 전체적으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서와 문제풀이집에 있는 내용이지만 강조했던 부분이 많이 출제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쉽고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듭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이론부터 학원 수업 과정에 맞춰서 공부한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반이나 파이널리뷰만 들은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적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혼동을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는 1번 문제, 3번 문제 중 PM의 정의와 종류, 6번 문제 중 뇌진탕과 관계된 문제는 다루지 않았던 문제라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분점수가 분명 존재하니 포기하지 않고 아는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셨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 제4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

(2024년도 시행)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모범답안】

윤성열 강사 작성

문 1. 다음 사례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담보별 보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유족별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25점)

면부책만 정확하게 작성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동, 대습상속과 관계된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지만 계산 문제를 실수하셨어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사례문제와 자체의 면부책은 수 없이 연습한 문제이고 혼동(문제집), 대습상속(파이널리뷰)과 관계된 내용만 작성해도 부분점수가 예상됩니다.

#### 모범답안

#### 1. 법률상배상책임 검토

##### (1) A의 법률상 책임

A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배법3조의 운행자로 B에 대하여 자배법3조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 민법상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도 존재하지만 자배법3조의 운행자책임이 우선 적용된다.

##### (2) 친족의 타인성

B는 A의 배우자로 타인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판례와 실무상 타인으로 본다.

#### 2. 약관상 보상책임의 검토

##### (1) 특약위반의 여부

특약 위반여부가 없으므로 전담보 보상책임을 검토한다.

##### (2) 대인배상1

#####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배법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피보험자

A는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한다.

3) 적용

대인배상1은 고의사고를 제외하고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B에 대하여 대인배상1 부책

(3) 대인배상2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2) 피보험자

A는 기명피보험자

3) 면책사유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보상하지 않는다.

4) 적용

B는 기명피보험자A의 배우자로 대인배상2는 면책

(4) 자기신체사고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한다. (운행 중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함)

2) 피보험자

B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함.

3) 적용

B는 자기신체사고로 부책한다.

### 3. 유족별 지급보험금

#### (1) 상속 관련 적용

##### 1)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공동상속이 되고 상속비율도 0.5를 가산한다.

##### 2) 대습상속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3) 혼동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507조에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다.

##### 4) 적용

상속순위 상 A, E가 공동 1순위 상속권자이나 E가 사망하였으므로 E의 상속권자인 F, G 대습하여 상속한다. 대인배상1의 경우 A의 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된다.(단순승인) 자기신체 사고는 보험금청구권으로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지급보험금

##### 1) 대인배상1

B의 손해 4억 \* 0.5 = 2억 / 상속 지분 A = 1억2000만원, F, G = 8000만원 (F = 4800만원, G = 3200만원) / A의 상속지분은 혼동으로 소멸됨. = 8000만원

##### 2) 자기신체사고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지급보험금

4억 - 8000만원 = 3억2000만원 / 1억한도로 지급 / A = 6000만원, F,G = 4000만원 (F = 2400만원, G = 1600만원)

\*G의 상속분은 친권자 F가 수령함.

문 2.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20점)

문제집에 기대로 있는 문제로 문제풀이 시간에도 같이 풀어본 문제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책임근재 시간에 많이 다루어 보는 문제라 다들 잘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범답안

1. 출퇴근 중 자동차사고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개인승용차, 오토바이등, 도보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2.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상에 미치는 영향

(1) 대인배상1과의 관계

대인배상1에는 산업재해 면책약관이 없다. 따라서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되는 자는 대인배상1으로 부책된다. 다만, 대인배상1의 보험금과 산업재해보상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다. 산업재해에서 보상받은 보험금은 손익상계 되고 보상받지 못하는 항목 즉 초과손해 부분은 보상된다.

(2) 대인배상2와의 관계

대인배상2에는 산업재해 면책약관의 규정이 있다. 피용자재해, 동료재해면책약관이 규정되어 있으며 약관에 초과된 손해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자기신체사고와의 관계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신체사고 공제액 기준에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금액”(산업재해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각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다.

(4) 무보험자동차상해와의 관계

무보험자동차상해에도 산업재해 보상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제액에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시 산업재해보험금은 공제된다.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인이 배상의무자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3. 다음 사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자가 커브 길에 미끄러지면서 보도를 정상 보행 중인 보행인 치어 사망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
- 이 사고로 사망한 보행인(피해자)의 배우자는 '갑' 보험회사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모든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및 종류를 기술하시오. (10점)

2) 위 피해자에 대한 '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및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PM 사례문제는 문제풀이, 사례집, 모의고사에서도 강조하며 풀어본 문제라 다들 잘 풀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PM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제3보험에서는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입니다만, 강사로써 이 부분을 놓친 건 반성합니다.

모범답안

1. PM의 정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1) 시속25km 이상운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PM의 종류

(1) 전동킥보드 (2) 전동 이륜평행차 (3)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3. 갑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1)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은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가 존재하지 않고 대인배상, 자기 신체사고 모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1) 약관규정(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한다.

2) 무보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중 피보험자동차 및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피보험자를 사상케 한 다음의 자동차.



- ① 대인배상2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 ②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③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가 적용되는 자동차
-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단, ④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함)

3) 적용

- ① PM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하지 않는다.
- ② PM 운전자가 도주하지 않는 경우  
대인배상1 한도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부책한다.
- ③ 정부보장사업  
PM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문 4.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치료관계'의 지급기준을 요약, 기술하고, 손해사정 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하시오 (15점)**

모의고사, 문제집 등 수없이 강조한 문제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잘 작성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범답안**

**1. 치료관계비의 인정기준**

**1) 상당인과관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치료비에 대하여 인정한다. 따라서 단순 검진,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의학적 타당성**

수술, 처치, 진료, 투약 등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비용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기회복이나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에서의 무리한 치료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금액적 타당성**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적이어야 한다. 사회 통념상, 일반거래의 기준상 비정상적인 고액의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자동차보험약관의 치료 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인정한다)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 진료비를 포함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응급치료비용 등, 치아보철비로 구성된다고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지만 열거된 내용이 아닌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 효과가 입증된 직접 치료비라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입원료**

1)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의사가 치료 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입원기간에 대한 상급 병실료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병실의 사정이 아닌, 의사의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급 병실료를 지급한다.

3)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2) 의료실비 등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보상한다. 약관에서는 ‘등’ 이라고 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직접적인 치료 관계비는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치아보철비

### 1) 약관규정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 2) 보상 시 유의사항

임플란트의 경우 실제 시술한 경우에 한하여 1치당 1회비용을 지급. 임플란트(영구) 내용년수에 따른 향후비용은 배제된다.

## 3. 손해사정 시 유의사항

### (1)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 시(4주 이상) 추가 진단에 따라 지불보증하고, 추가 진단이 없을 경우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2) 상급병실

병실사정으로 인한 상급병실 예외 적용 시 병원급 이상인지 확인하고 환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의원급(한의원포함)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3)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본인부담금

과실책임주의의 도입으로 12~14급의 경상환자 대인배상2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문 5.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수정하는 요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문제이나 모의고사에는 다루지 않았던 문제라 많이 아쉽네요. 예측하지 못한 강사의 잘못입니다.

모범답안

1. 보행자의 과실 가산요소

- 1) 야간, 기타시야의 장애
- 2) 간선도로
- 3) 횡단보도 부근
- 4) 정지, 후퇴, 사행
- 5) 횡단규제표시
- 6) 교차로 대각선흡단
- 7) 술에 취한 상태
- 8) 보행자의 급 진입

2. 보행자의 과실 감산요소

- 1) 주택, 상점가, 학교
-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 3)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4) 집단횡단
- 5) 차보도 구분 없는 거리
- 6) 차의 현저한 과실 (전방주시의무, 음주운전(혈중 알콜0.03미만),속도위반(10~20km 미만 등)
- 7) 차의 중대한 과실 (음주운전, 무면허, 졸음, 속도위반20km이상, 약물운전 등)

3. 적용의 범위

자동차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되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본다.

문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뇌진탕'과, "영역별 세부지침" 중 '척추'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실무자 이외의 일반 수험생들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뇌진탕 부상급수 11급과 관계된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이슈가 되었지만 이 부분까지 출제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 했습니다. 척추와 관계된 부분은 사례문제집에 그대로 있는 부분이라 문제집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작성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범답안

1. 뇌진탕

(1) 개념

뇌진탕은 뇌 기질적 변화는 없지만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것을 말한다.

(2) 뇌진탕의 기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최초진료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된다.

(3) 상해급수 11급

뇌진탕은 상해급수 11급으로 경상환자 12~14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척추

(1) 완전마비, 불완전마비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2)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탈출증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3) 척주손상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4) 마미증후군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